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및 운영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

2014. 4. 30



의 왕 시

목 차

제1장 사업개요	1
제2장 사업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5
제3장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7
제4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2
제5장 출자회사의 설립과 출자	17
제6장 사업시행	18
제7장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18
제8장 추진일정 및 기타	23

제1장 사업개요

제1조 (목적)

본 지침서는 의왕시가 의왕시 초평동 왕송호수 근린공원 일원에 '레일바이크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레일바이크 설치 및 운영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은 의왕시 왕송호수 근린공원 일원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② “사업신청자”라 함은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에 참여하는 단독법인 또는 5개 이내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본 사업에 대하여 개발계획 및 투자방식 등 개발에 대한 제반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 ③ “대표사”라 함은 컨소시엄 참여법인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서 컨소시엄 구성원으로부터 사업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 ④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한 사업신청자 중에서 사업 계획서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얻어 의왕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을 말한다.
- ⑤ “민간사업자”라 함은 의왕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제19조에 의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한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을 말한다.
- ⑥ “사업계획서”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계획서를 작성, 공모지침서에 따라 의왕시에 제출하는 사업추진에 관한 포괄적인 기본계획서를 말한다.
- ⑦ “출자회사”라 함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왕시와 사업주관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말한다.
- ⑧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의왕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본 사업의 수행에 투입되는 일체의 비용(출자자본금 제외)을 말한다.
- ⑨ “선정심의위원회”라 함은 평가분야별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의왕시가 선정한 관련 분야 전문가인 선정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 ⑩ “사업협약”이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에 의하여 우선협상 대상자와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 ⑪ “사업신청보증금”이라 함은 본 사업의 성실한 사업신청을 보증하기 위해 사업 신청자가 사업신청서 접수 시 의왕시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⑫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이라 함은 본 사업의 성실한 사업추진 협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협약 체결 후 5영업일 이내에 의왕시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사업개요)

본 사업은 의왕시 왕송호수 근린공원 일원의 레일바이크 설치 및 운영 사업으로서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내용 :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순환꼬마열차 포함) 및 운영 사업
- ② 위치 :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278-1번지 일원(왕송호수 일대)
- ③ 대상구간 : 왕송호수 근린공원 및 주변(그림 8-1 위성사진 참조)
- 면적 : 202,288m²
- ④ 사업방식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의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민·관 합동개발방식
- ⑤ 예상 사업비 : 약 192억원(시 49%, 민자 51%)
※ 출자자본금(총사업비의 10%)을 별도확보 하여야 한다.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및 부담금 등이 포함된 예상금액으로 향후 개발계획 확정시 사업비는 변경가능하며 사업비 증액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⑥ 건설 준공(예정) 기간 : 2015. 4월
※ 단, 인·허가 지연 등 지연사유 발생 시 의왕시와 협의하여 조정가능하다.
- ⑦ 운영기간 : 출자회사 설립일로부터 최장 30년
(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일정,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간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기간은 추후 상호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



<그림8-1>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사업 구간

제4조 (사업계획)

- ① 본 사업의 사업계획과 개발규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자가 자율 제시한다.
 1.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철도박물관, 조류생태과학관, 자연학습공원)과의 연계를 통해 명품관광지를 개발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촉진
 2. 개발구간 인근 지역주민의 상권 마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고, 지역주민과 소득창출 연계방안 고려
 3. 주변 지역여건과 지자체 개발계획, 상위 관련계획, 관련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 ② 사업신청자는 제3조제3항의 설치구간에 개발사업을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출자회사 명의로 사유지(국·공유지 포함)를 사용허가 또는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출자회사가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사유지 매입 전에 의왕시와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운영기간 이후의 사용방안(사용허가 연장, 매입 등)에 대해서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신청자는 제3조에서 규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일반적인 설계조건

항 목		단위	적용기준	비 고
설계속도		km/h	20이하	
케 간		mm	1,000	별도 제안가능
최소 곡선반경		m	50이상	
최대경사		%	1.5이하	120m이하
시 공 기면 폭	토공부	m	3.6	최대 4m까지 가능
	교량부	m	3.0	

2. 순환(꼬마)열차 제원

항 목		단위	적용기준	비 고
제원	기관차	L*W*H (m)	5.0 × 1.2 × 2.0 이하	
	객차(1량)		5.6 × 1.2 × 2.2 이하	
적용하중		ton	13 이하	
운행편성		대	기관차(1) + 객차(4)이하	
승차인원		명	84이하	

※ 위 규정 범위 이내에서 별도 제안 가능

- ④ 왕송호수 제당부분의 설계 및 시공은 의왕시(출자회사)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 실시할 예정이며, 제당부분 사업비 약 26억원(설계비, 시설비, 기타부대비 등)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왕송호수 제당부분 설계 및 시설비 등은 추후 설계·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5조 (관련법규 및 규정의 이행)

출자회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수도권정비계획’,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2020 의왕도시기본계획’, 등
- ②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 규정 등(상기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 규정 포함)

제2장 사업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제6조 (사업신청자격)

- ①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5개사 이내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하며,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다.
- ② 사업신청자는 법인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하며 컨소시엄인 경우에는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위임을 받아 컨소시엄 대표사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신청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다음의 신용평가등급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BB- 이상	A3- 이상	BB- 이상

- ④ 신용평가등급은 접수일 현재의 유효기간 내에 평가된 것이어야 하며,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사 포함 2개사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 ⑤ 단독법인 사업신청자와 컨소시엄의 대표자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주된 업종을 운영할 수 있거나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신청법인의 자기자본금이 15억이상 (직전연도 재무제표에 의함)이어야 한다.
- ⑥ 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 협약서(각 출자자의 책임과 의무가 명시된 합의서) 및 대표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자격제한)

- ①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 또는 상실된 자, 부도·파산 처리된 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② 금융기관은 사업신청자(대표자)로 참여할 수 없다.(일반 출자자로 참여가능)
- ③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에 복수로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 (사업신청서류)

사업신청자가 사업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서식1> 및 첨부서류 각 1부.
- ② 대표자 선임서 <서식14> 1부
- ③ 인감신고서 <서식4> 1부
- ④ 서약서 <서식2> 1부
- ⑤ 청렴 이행서약서 <서식15> 1부
- ⑥ 사업계획서 작성관계자 현황 <서식3> 1부
- ⑦ 신용평가서(원본) 1부
- ⑧ 타인자본조달부분 금융기관본점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 (원본) 1부
- ⑨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각 1부
- ⑩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 ⑪ 사업실적 현황 <서식17, 17-1>
- ⑫ 사업계획서 20부
- ⑬ 사업신청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 등)
- ⑭ 사업계획서 전산파일이 수록된 CD 2장

제9조(사업신청보증금)

- ①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상 총사업비의 2/100에 해당하는 사업신청보증금을 사업신청서 접수 시 의왕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사업신청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현금 또는 보증서로 의왕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신청보증금 기산일은 사업신청일이며, 완료일은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일 까지로 한다.
- ④ 사업신청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의 사업신청서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신청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의왕시에 귀속한다. 단, 반환하는 경우 이자는 의왕시에 귀속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 1.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 선정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시중은행 영업기준일 기준, 이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기한의 계산은 동일)에 반환
 - 2.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신청이 무효된 경우 : 의왕시에 귀속
 - 3.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제19조의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의왕시에 귀속

제3장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제10조(사업계획서 작성기준)

- ① 사업신청자는 제7장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주요지표는 다음과 같으며, 기준일은 공고일로 한다.
 - 1. 가격산출기준 : 경상가격
 - 2. 실질할인율 : 사업신청자가 자율제시
 - 3. 차입이자율 :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표면이자율의 대출수수료, 주선수수료, 대리은행수수료 등 대출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한 실효이자율(All-In Cost)을 별도 제시한다.
 - 4. 예금이자율 : 시중은행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5. 환율 : 공고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 발표 기준 환율
 - 6. 물가상승률 : 3%
 - 7. 도량형 : 국제단위(SI)
 - 8. 기타 : 준공 후, 본 시설에 대한 운영 시간은 유사 시설의 운영 사례를 고려하여 분석

제11조(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는 요약보고서, 본보고서, 부속서류로 구성되며 각 20부를 제출하되, 사업계획서의 표지에 사업신청자의 상호는 원본 1부만 기재하고 19부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원본에는 각 페이지별로 컨소시엄 대표 출자자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제출마감 : 2014년 6월 30일 18:00까지

※ 단, 우편접수는 불가함

2. 장소 : 경기도 의왕시청 철도특구과(본관 3층)

3. 사업계획서 특허권 등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각종문제는 사업신청자가 책임진다.

4. 사업계획서의 비공개 및 수정금지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행정기관의 처분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업신청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다.

5. 사업계획서의 접수 반려 사항

- 사업계획서는 필히 본 공모 지침에 준하여 작성을 하여야 하며, 본 공모 지침에 준하여 작성되지 않은 사업계획서 혹은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서는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 미흡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평가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12조 (사업계획서 평가분야 및 배점)

① 평가분야는 개발계획, 총사업비 산정 및 자금조달 능력, 경영능력 및 경영계획으로 나누며, 총점 1,0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평가요소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계획(350)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용	배점	
개발구상 (150)	개발컨셉 구성	개발컨셉의 우수성 및 차별성	60	150
		테마설정의 경쟁성	40	
		주변관광자원과 연계성	30	
		인근 지역주민의 상권마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반영성	20	
개발계획 (150)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	30	60
		지자체 도시 계획 등의 연계를 고려한 계획의 현실성	30	
	시설물 배치계획	시설물 배치의 합리성	30	90
		전 구간 단절 없는 시설 배치의 연계성	20	
		지장물 이설 및 배치의 적정성	10	
		교통관리계획 (동선 및 주차장 확보 계획)	10	
	왕송호수 철새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20		
건설계획 (50)	시공계획의 적정성	인허가·설계·시공의 구체적 실현성	20	30
		공사관리(공정, 품질, 안전, 원가, 환경, 민원)의 적정성	10	
	친환경관리 및 민원대처 계획	친환경 관리 및 에너지 절감 계획	10	20
		민원대처 계획(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10	

2. 총사업비 산정 및 자금조달능력(350)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용	배점	
사업수행 능력 및 재무능력 (170)	사업수행능력	출자자의 자본금 및 기업 규모 등	50	100
		사업수행능력의 우수성	50	
	재무능력	출자자의 재무상태, 출자여력,	40	70
		출자자의 신용상태 등의 우수성	30	
총사업비 산정 및 자금조달 계획 (180)	총사업비 산정	사업성 대비 총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40	80
		총사업비 산출근거의 구체적 제시 및 타당성	40	
	자금조달 계획	자금 조달 구조와 방법의 현실성	50	100
		자금조달계획의 우수성 및 확실성	50	

3. 경영능력 및 경영 계획(300)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용	배점	
경영능력 (80)	출자자 구성과 사업 추진 실적	출자자 구성의 우수성	30	80
		출자자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및 구체성	20	
		최근 5년간 사업실적	30	
경영계획 (180)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의 적정성	30	60
		선정된 유치업종 규모의 적정성	30	
	운영전략 및 마케팅계획	운영전략 및 계획의 우수성	20	60
		직영 또는 임대계획의 적정성	20	
		마케팅계획 및 홍보 전략의 우수성	10	
		유치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10	
	수지분석 및 매출 손익 추정	사업성 분석의 충실성 및 타당성	30	60
		매출 및 손익추정의 적정성	20	
		개발이익의 실현 가능성	10	
	사업관리 계획 (40)	사업관리 및 리스크 관리계획	건설 및 운영기간 중 사업관리 조직편성 및 인력 운영의 우수성	20
사업리스크 분석의 적정성			10	
사업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10	

제13조 (감점)

감점사항과 감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감점사항		감점기준
사업계획서	제본규격 위반	권당 1점
	용지규격 위반	쪽당 1점
	쪽수 초과	초과 쪽당 1점

제14조 (평가방법)

- ① 평가는 외부전문가와 내부전문가(의왕시)로 구성하여 상대평가로 한다.
- ② 사업신청자수에 따른 등급별 배분 분포와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결정하여 적용한다.

1. 평가요소별 가장 우수한 사업신청자로부터 A, B, C, D, E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사업신청자수를 A 10%, B 20%, C 40%, D 20%, E 10%로 배분하되 평가대상이 5개 이하인 경우 위 등급별 배분율에도 불구하고 A, B, C, D, E 순으로 1개씩 배분한다.
2. 등급별 사업신청자수의 배분은 전체 사업신청자 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소수점 이하 수치가 산출될 경우 소수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 단, 소수점 이하의 수치가 동일한 경우 A, B, C, D, E 순서에 의한다.
3. 등급별 배분 분포와 배점 기준은 아래와 같다.

<등급별 배분 분포>

등급	사업신청자수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A	1	1	1	1	1	1	1	1	1	1	1	1	1	2
B	1	1	1	1	1	1	2	2	2	2	3	3	3	3
C		1	1	1	2	3	3	3	4	5	5	5	6	6
D			1	1	1	1	1	2	2	2	2	3	3	3
E				1	1	1	1	1	1	1	1	1	1	1

<등급별 배점 기준>

등급	A	B	C	D	E
배점	100%	90%	80%	70%	60%

- ③ 평가요소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0”점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각 사업신청자의 평가점수는 각 평가분야별 선정심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심의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값(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으로 하며, 각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평가부문 득점은 평가 분야별 점수를 합산한다.(단, 사업신청자가 2개업체 이상일 경우 각 업체가 종합 득점한 위원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 ⑤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⑥ 제8조제14항의 “사업계획서 전산파일이 수록된 CD”는 평가에 활용하지 않는다.

제4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15조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의왕시는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는 의왕시가 선정한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와 내부전문가(의왕시)로 선정심의위원을 구성한다.

제16조 (심의결과의 공개)

- ① 의왕시는 사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평가를 완료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② 의왕시는 평가결과에 의한 평가순위를 공개하되, 평가과정 및 평가 점수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7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① 의왕시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개발계획”, “총 사업비 산정 및 자금조달능력”, “경영능력 및 경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최고의 점수를 얻은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동점이 2이상인 경우 제12조 평가 중 총사업비 산정 및 자금 조달능력 분야, 개발계획 분야, 경영능력 및 경영계획 분야 순으로 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② 의왕시는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본 사업의 공모 목적에 적합한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9조제1항에 의한 기한 내에 우선협상자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제20조 제1항에 의한 기한 내에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의왕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제1항에 의한 최고득점자의 차순 위자(이하 ‘차순 위자’로 한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제19조에 따라 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차순 위자가 우선협상대상자와 비교하여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의왕시가 차순 위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의왕시는 사업신청자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자의 적정성 여부를 절대평가 하여 총점의 70%이상 득점하고 적정의견이 선정심의위원의 과반수 이상인 경우에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8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등)

- ①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신청자가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왕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방해한 경우 의왕시는 해당 사업신청자의 사업 신청을 무효로 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우선협상대상자가 의왕시에 제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협상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왕시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 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③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의왕시는 향후 2년 동안 의왕시가 시행하는 민관공동사업에 대하여 해당 컨소시엄 내 귀책사유가 있는 개별 법인은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 (사업협약 체결)

-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 공모 지침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의왕시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의왕시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사업협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의왕시와 민간사업자와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출자회사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출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

4. 운영관리비용 및 투자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5. 자금조달에 관한 세부내용(자기자금, 타인자본 등)
 6. 수익금 산정 및 배당에 관한 사항
 7. 민간사업자의 협약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8. 사업협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9. 출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설립자본금·증자에 관한 사항
 10. 출자회사 출자자의 출자비율에 관한 사항
 11. 출자회사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출자회사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13. 출자회사 주주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출자회사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인허가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16. 기타 우선협상자가 의왕시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 ③ 사업신청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의왕시가 우선협상 대상자의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며, 세부조건들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④ 의왕시와 민간사업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사업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지 못하며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⑤ 우선협상대상자 내 시공사 포함 시 유자격자에게 시공권에 대한 우선협상 권리를 부여하고, 공사비의 원가계산은 전문기관(조달청 등)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⑥ 우선협상대상자 내 시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사비의 원가계산은 전문기관(조달청 등)의 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계약한다.
 - ⑦ 최소수입운영보장제(MRG)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사업협약시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사업협약이행보증)

- ① 사업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시중 은행 영업일기준) 현금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협약이행보증서를 의왕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의 기산일은 사업협약 체결일이며, 완료일은 본 사업 운영 개시일 후 3년까지로 한다. 납부된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은 3년이 지난 다음 날 납부된 형태대로 반환한다. 단, 사업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의왕시에 귀속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21조 (사업계획의 조정)

- ① 출자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변경 시 의왕시와 민간사업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 경우 의왕시와 민간사업자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1. 총 사업비의 5%이상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이익과 배분, 사업기간 변경 등 기타 중요한 사항
- ② 의왕시와 민간사업자는 각종 인·허가 결과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

- ① 의왕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2.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제24조에 의한 출자회사 설립 기한 내에 회사를 설립하지 않는 경우
 3.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서의 내용에서 벗어나 본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4. 기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공모지침서의 중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 민간사업자가 <서식15>의 청렴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6. 민간사업자가 본사업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계획 및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7. 민간사업자 구성법인 중 일부 법인이 제20조에 의한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제24조에 의한 출자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부도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다른 구성 법인이 사전에 의왕시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대체 출자자를 선정하거나 그 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을 수 있다.)
 8. 의왕시와 법인설립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조건보다 의왕시에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의왕시와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협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곤란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사업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토교통부, 경기도 및 관련 인허가권자와의 심의·협의 등의 과정에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그 승인결과로 인해 상호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
 3. 기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관련법규 변경 및 상급기관의 명령, 납득할 만한 주민반대 등 중대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제23조 (손해배상)

- ① 제20조의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민간사업자는 의왕시에 위약금으로 사업협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한다.
- ② 제22조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사업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및 민간사업자의 출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처분권과 출자회사의 잔존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의왕시에 귀속된다.
- ③ 제22조제2항에 의한 사업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의왕시는 제20조의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민간사업자에게 납부된 형태대로 반환토록 한다. 단, 사업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의왕시에 귀속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5장 출자회사의 설립과 출자

제24조(회사설립 등)

- ①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왕시와 사업주관자는 사업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출자회사를 설립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설립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출자회사 임원(이사, 감사) 등의 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왕시 지분(49%)에 적합하게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출자금 등)

- ① 출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19억 2천만원으로 하며, 출자자별 출자지분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의왕시의 출자금은 9억4천80만원으로 한다.
 2. 단독법인 및 컨소시엄 구성사는 의왕시 출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야 하며, 다만 컨소시엄 대표사는 5억 이상 출자하여 컨소시엄 구성사 중 최대출자자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출자지분 및 출자금액은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② 출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정하며, 의왕시와 민간사업자는 상호신뢰에 입각하여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 ③ 의왕시는 본 사업의 건전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사업주관자의 보유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의왕시 및 출자회사는 투자재원에 대한 일체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다.
- 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출자회사 설립 전까지 의왕시의 승인 없이 출자자의 구성 및 지분을 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의왕시의 승인 없이 변경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보증금은 의왕시에 귀속된다.
- ⑥ 출자회사 설립이후 출자자 또는 그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왕시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시행

제26조(사업시행)

- ① 출자회사는 사업주관자의 사업계획을 기본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 환경의 변화, 관련 법령 및 규정, 관련 상위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의왕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출자회사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설계하여 인·허가를 취득하고 건설(지장물 이설, 영농보상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출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출자회사는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국·공유지를 사용 및 점용할 경우,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본 사업과 관련한 상부기관 및 시의회의 감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처분사항은 반영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선 수행용역 등의 인계)

- ① 출자회사의 설립 전 의왕시가 본 사업을 위해 체결한 협약 및 추진용역 등에 대하여 출자회사 설립 후 지체 없이 의왕시로부터 권리 및 의무를 인계받아 협약이행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출자회사의 설립 전 지출된 본 사업의 투입비용에 대해서 출자회사 설립 후 지체 없이 정산하거나 의왕시의 출자 지분 분담금으로 변경 정산하여야 한다.

제28조(이익의 배당)

출자회사는 매 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에서 법정 적립금, 준비금, 차입원리금 상환을 위해 유보하여야 할 이익금을 제외한 금액을 주주에게 이익 배당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제29조(사업계획서 구성)

- ① 사업계획서는 요약보고서, 본보고서, 부속서류의 총 3권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제1권 요약보고서
2. 제2권 본보고서
3. 제3권 부속서류 : 감사보고서 원본(또는 원본대조필 날인된 사본)등 각종 증빙서류

- ② 사업계획서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용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 ③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만 유효하다.
- ④ 사업신청자는 공사의 적정 품질 및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예정 가격에 대한 공종별 예상 공사비를 고려하여 적정 낙찰가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계획서의 규격)

- ① 제1권 요약보고서와 제3권 부속서류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A4용지 크기로 3홀(hole) 좌철 바인더 형태로 제출한다.
 2. 부속서류 중 바인더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자료(결산서 등)는 별도 제출한다.
- ② 사업계획서의 제2권 본보고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서의 표지는 <서식 19>를 도서규격 및 편철에 맞추어 사용하도록 한다.
 2. 사업계획서는 100쪽 이하로 매수를 제한한다. 단, 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 산정시 제외하며, 부분은 출자자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지 않는다.
 3. 사업계획서 규격 및 세부 작성지침은 아래의 각 목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 표와 그림 등은 이미지 형식(*.jpg)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 가. 용지크기 : A4(210mm×297mm), A3(297mm×420mm)
 - 도면, 표 등은 필요시 A3 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페이지를 산정할 때 2page로 산정하며 제출 시 A4 사이즈에 맞게 접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재질
 - 표지 : 색상(무색) 레자 크지 200g/m²
 - 본문 : 백상지 100g/m²
 - 간지 : 연녹색(색지)

다. 제본방법 : 무선좌철 (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을 본드제본)

라. 글자색상 : 흑색

마. 글자모양 : 신명조

바. 쪽 번호 : 하단 중앙에 “-1-”, A3규격은 “-1-, -2-”로 표기

사. 줄 간 격 : 200%

아. 여 백 : 좌우 각각 25.0mm, 상하 각각 15mm

자. 구성 및 편집

- 대분류 : 글자크기 18point

제1장....

제2장....

- 중분류 : 글자크기 15point

1.1.....

1.2.....

- 소분류 : 글자크기 13point

1.1.1...

1.1.2...

- 본문내용 : 글자크기 13point

1) / 가) / (1) / (가) / ①

③ 사업계획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외국어나 한자는 ()안에 표기하고,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한다.

④ 사업계획서의 인쇄는 한 면 인쇄 기준으로 한다.

제31조(요약보고서 작성)

① 요약보고서는 사업계획서 제1권에 작성하며,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컨소시엄 대표사와 컨소시엄 구성사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사업신청자 소개

1. 사업신청자의 법인 일반현황을 <서식6>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사업신청자의 법인연혁을 <서식6>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③ 주주 및 경영진 현황

1. 사업신청자의 주주현황에 관한 사항을 <서식13>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발행주식 소유가 많은 순으로 주주 10인까지 기술하며, 주주의 총수가 10인이 안 될 경우에는 모든 주주를 기술한다.(개인정보보호침해)
2. 신청자의 경영진 현황을 <서식13>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비상근 임원 및 미등기 이사도 포함한다.

④ 출자회사의 출자자 구성 및 역할

1. 향후 설립될 출자회사의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을 <서식5> 과 <서식12>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사업신청자는 당해 사업신청 목적과 사업수행 의지, 당해 사업수행의 적합성, 출자자간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 상호 보완성 등을 기술하고 출자자 상호간 역할과 출자지분율에 관해 출자자간에 체결한 계약서가 있으면 사본을 공증 받아 부속서류로 제출한다.

⑤ 사업신청자의 재무현황

1. 사업신청자의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서식7> 과 <서식8>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사업신청자의 최근 3년간 재무비율을 <서식9>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일 경우 <서식 10>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제2호 양식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예: 금융업 등)인 경우에는 동 업계에서 인정되는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주요 항목 위주로 작성한다.
4. 사업신청자의 최근 3년간의 감사보고서에 기술된 감사의견을 <서식 11>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5. 최근 3년간의 재무 상태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에 의해 작성하고 감사보고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날인)을 부속서류로 제출하되,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결산서 또는 회계법인 확인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본보고서 작성)

- ① 개발계획, 총사업비의 산정 및 자금조달능력, 경영능력 및 경영계획 등 사업계획은 제2권 본보고서에 작성한다.

② 개발계획

1. 사업신청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전제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시행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계획 작성 시 다음의 주요 도면을 수록하여야 하며, 별도의 도면축적 제한이 없는 경우는 도면축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주변현황도(지도, 사진 등으로 표현 가능)
 - 전 구간 종합 시설배치도(A3 좌철접이, 도면축적 1/1000)
 - 시설 및 건축물 계획도
 - 시설물 계획도 : 시설물개요, 배치도, 기타 시설물 계획도면 등
 - 건축물 계획도 : 건축개요, 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 교통관리 계획도 : 동선, 주차 계획도면 등
- ※ 필요시 단계별 시공계획도, 지장물 이설계획도, 세부 조감도, 투시도 등 가능

③ 총사업비의 산정 및 자금조달계획

1. 총사업비 산정은 공사비(건축, 토목, 궤도, 전력, 통신, 소방, 조경, 레일바이크, 순환열차 등), 설계비, 감리비, 지장물 이설비, 토지임대료, 제세공과금, 출자회사 운영비, 인허가 소요비용, 예비비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작성하되, 경상가격기준으로 작성하며,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자금조달계획은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조달수단별로 구분하여 월차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각 항목별 세부조달계획을 포함한다.
3. 민간사업자는 예상 사업비(192억)중 민간사업자의 지분 51%(9,792백만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의왕시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천원)

확보예산액				비 고
합계	기투자	출자자본금	시설비	
10,348,800	700,000	940,800	8,708,000	

4. 출자회사에서는 투자재원에 대한 일체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다.
5.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을 제외한 타인자본조달과 관련하여 조달방법의 확실성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금융기관본점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 원본)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경영계획

1. 도입시설별로 시장 환경, 사업여건, 수요예측 및 근거 등을 제시하고, 임대가격은 인근 시세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산정한다.
2. 운영전략 및 마케팅계획은 도입시설별 운영전략(소요인력 및 각 시설 운영 체계 포함), 운영형태(직영, 임대 등), 운영구조 등 운영계획과 단계별 홍보 전략 및 계획을 제시한다.
3. 임대계획은 사업신청자의 임차인 참여부분 및 운영방안, 사업신청자 이외의 임차인의 유치계획 등을 제시하고, 임차인 유치의 확실성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한다.
4. 추정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등)는 영업개시 후 30년에 걸쳐 작성하되, 작성한 기준을 제시하고, 산출내역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5. 현재 이용중인 부곡근린공원(자연학습공원)관리동 1층 일부를 관리사무소 및 매표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사업관리계획

1. 사업관리계획은 본 사업의 건설 및 운영기간동안 사업관리 조직(소요인력 포함) 및 각 시설 운영 체계를 기술한다.
2. 당해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신청자의 기술지원 또는 경영지원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방법 및 형태를 기술한다.
3. 리스크관리계획은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 분담 등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이행 및 공사완공 보증 등 사업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8장 추진일정 및 기타

제33조 (추진일정)

민간사업자 선정 일정은 아래와 같다.

1.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일 : 2014년 4월 30일
2.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사업자대상지 방문은 사업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3. 질의접수 및 회신

가. 질의 접수기간 : 2014년 5월 7일 ~ 5월 9일

나. 질의사항은 질의기간 내에 <서식 18>서면질의서에 의하여 반드시 아래의 Fax를 통하여 의왕시에 접수하여야 하며, 유선으로 의왕시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질의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E-Mail로 원본송부 할 것)

- FAX : 031-345-3069

- E-mail : kim2826@korea.kr

다. 질의회신 예정일은 접수완료일로부터 10일(5월 19일) 이내에 의왕시 홈페이지에 일괄 회신하며, 질의서에 대한 서면회신 내용은 본 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라. 공지한 질의서 회신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다.

마. 제시한 질의기간 및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질의사항은 무효처리 한다.

4. 사업 참가 의향서 접수

가. 일 시 : 2014년 5월 9일 09:00 ~ 18:00까지

나. 장 소 : 의왕시청 철도특구과

다. 제출서류 : 사업 참가 의향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

마.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1개 회사 이상이 포함된 컨소시엄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음

5. 사업계획서 작성관련 자료 열람 및 제공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필요한 자료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열람 및 제공은 사업 참가자 의향서 접수자에 한한다.

가. 기간 : 2014년 5월 12일 ~ 2014년 5월 13일

나. 장소 : 의왕시청 철도특구과

다. 자격 : 사전에 열람신청서(구체적인 요청자료 명기)를 공문으로 의왕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

라. 자료 : 신청서 검토 후, 의왕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만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함.(보안각서 제출)

6.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접수 및 사업계획서 제출

가. 일 시 : 2014년 6월 30일 월요일 09:00 ~ 18:00

나. 장 소 : 의왕시청 철도특구과

다. 제출방법 : 사업신청자 중 대표사의 대표자가 인감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수령 및 등록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가 아닌 경우 신분증과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간의 협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대표사 명의로 참가등록이 가능함

라. 우편에 의한 접수는 허용하지 않음.

7. 심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추후통보

8. 상기일정은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4조 (사업신청자 유의사항)

- ① 본 공모지침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신청자는 언제든지 본 공모참가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의왕시는 본 공모 진행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정보의 제공 요구를 거부 할 수 있다.
- ② 본 공모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정보의 대외유출로 인하여 공모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해당 사업신청자는 본 공모의 참가 자격을 상실한다.
- ③ 본 공모 및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의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며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한다. 또한 본 공모지침 및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사중재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한다.
- ④ 사업신청자는 본 공모와 관련하여 본 공모지침서의 검토, 제공된 정보의 확인 등 신청서 제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어떠한 이의나 조건 또는 단서 없이 공모에 참가하여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을 무효로 한다.
 1.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업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사업신청을 한 경우
 2. 제8조 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제8조의 사업신청서류가 부정한 자료(위조, 변조, 허위 등)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제35조 (사업자공모지침의 해석)

- ① 본 공모와 관련하여 공고문, 공모지침서, 질의답변서가 상이한 경우 질의답변서, 공모지침서, 공고문 순으로 우선하여 해석한다.
- ② 본 공모지침등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의왕시의 해석 및 의견에 따라야 하며, 해당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6조 (기타사항)

① 주소 및 연락처

1.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2. 담당부서 : 의왕시청 철도특구과
3. 전화 : 031-345-3071~3072, Fax : 031-345-3069
4. 홈페이지 주소 : <http://www.uw21.net/kr/> ⇒ 고시/공고

② 비용부담

1. 본 공모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
2. 사업신청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왕시에게 사업계획서 준비·작성·제출 및 협의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3. 의왕시와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사례 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본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법률·회계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전반에 걸친 검토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은 총 사업비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③ 저작권

의왕시는 제출받은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모든 소유권 및 저작권은 의왕시에 귀속되며, 시의 계획에 따라 책자로 인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본 지침과 관련한 공지사항 등 정보의 전달 및 사업신청자의 의무

1.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자는 반드시 본 공모지침서를 열람하여야 하고, 본 작성지침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다.
2. 본 공모 공고일 이후 공고내용, 본 공모지침서의 일부 변경 및 조정사항 등의 발생 시에는 의왕시의 홈페이지에서만 공고한다.

<서식 1> 사업신청서

사업신청서																															
법 인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기재)																													
소 재 지																															
<p>위와 같이 본 사는 의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및 운영 사업의 사업주관자 공모와 관련하여 관련법규, 관련규정 및 공모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신청하며, 제출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사 대표이사 (인)</p>																															
의왕시장 귀하																															
<p>구비서류</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80%;">1. 사업신청서(서식1)</td> <td style="text-align: right;">1부</td> </tr> <tr> <td>2. 대표사 선임서(서식14)</td> <td style="text-align: right;">1부</td> </tr> <tr> <td>3. 인감신고서(서식4)</td> <td style="text-align: right;">1부</td> </tr> <tr> <td>4. 서 약 서(서식2)</td> <td style="text-align: right;">1부</td> </tr> <tr> <td>5. 청렴이행서약서(서식15)</td> <td style="text-align: right;">1부</td> </tr> <tr> <td>6. 사업계획서 작성관계자 현황(서식3)</td> <td style="text-align: right;">1부</td> </tr> <tr> <td>7. 신용평가서(원본)</td> <td style="text-align: right;">1부</td> </tr> <tr> <td>8. 타인자본조달부분 금융기관본점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 (원본)</td> <td style="text-align: right;">1부</td> </tr> <tr> <td>9.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원본)</td> <td style="text-align: right;">각 1부</td> </tr> <tr> <td>10.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td> <td style="text-align: right;">1부</td> </tr> <tr> <td>11. 주된 업종 경영실적(서식17, 17-1)</td> <td></td> </tr> <tr> <td>12. 사업계획서</td> <td style="text-align: right;">20부</td> </tr> <tr> <td>13. 사업신청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 등)</td> <td></td> </tr> <tr> <td>14. 사업계획서 전산파일이 수록된 CD</td> <td style="text-align: right;">2장</td> </tr> </table>				1. 사업신청서(서식1)	1부	2. 대표사 선임서(서식14)	1부	3. 인감신고서(서식4)	1부	4. 서 약 서(서식2)	1부	5. 청렴이행서약서(서식15)	1부	6. 사업계획서 작성관계자 현황(서식3)	1부	7. 신용평가서(원본)	1부	8. 타인자본조달부분 금융기관본점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 (원본)	1부	9.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원본)	각 1부	10.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11. 주된 업종 경영실적(서식17, 17-1)		12. 사업계획서	20부	13. 사업신청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 등)		14. 사업계획서 전산파일이 수록된 CD	2장
1. 사업신청서(서식1)	1부																														
2. 대표사 선임서(서식14)	1부																														
3. 인감신고서(서식4)	1부																														
4. 서 약 서(서식2)	1부																														
5. 청렴이행서약서(서식15)	1부																														
6. 사업계획서 작성관계자 현황(서식3)	1부																														
7. 신용평가서(원본)	1부																														
8. 타인자본조달부분 금융기관본점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 (원본)	1부																														
9.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원본)	각 1부																														
10.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11. 주된 업종 경영실적(서식17, 17-1)																															
12. 사업계획서	20부																														
13. 사업신청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 등)																															
14. 사업계획서 전산파일이 수록된 CD	2장																														

<서식 2> 서약서

서 약 서

사업명 :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및 운영 사업

본 신청자는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허위 없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위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등 어떠한 법적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이에 서약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왕 시 장 귀하

<서식 5>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

(단위 : 백만원, %)

출자자명	주요업태 및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출자 주식수	자본금	지분율	비고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대표사 (컨소시엄구성사 포함)>						
소 계					51	
<의왕시>						
소 계					49	
합 계					100	

- 주) 1. 자본금은 액면가액(₩5,000/주)을 기준으로 기재
 2. 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3. 의왕시의 출자금은 9억 4천 80만원으로 작성함

<서식 6> 법인 일반현황

법 인 일 반 현 황

회 사 명		대표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	태	
본 사		업	종	
사 업 장		주 요 제 품		
		결 산 월 일		
자 본 금	백만원	설 립 일 자		
종 업 원 수	명	주 거 래 은 행		
매 출 액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 주) 1. 컨소시엄의 개별 구성원별로 작성함
 2. 총자산 및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서류로 제출함

법 인 연 혁

회사명 : _____

년 월 일	내 용

- 주) 1. 컨소시엄의 개별 구성원별로 작성함

<서식 7>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회사명 : _____

(단위: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 동 자 산 당좌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비 유 동 자 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100		100		100
유 동 부 채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비 유 동 부 채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부 채 합 계) 자 본 금 자 본 잉 여 금 이 익 잉 여 금 (당 기 순 이 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 본 조 정 항 목 (자 본 총 계)						
부 채 · 자 본 총 계		100		100		100

- 주) 1. 구성비는 자산총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함.
 2. 상기내용 작성 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함.
 3. 권소시업의 경우 권소시업 구성사별로 작성함.
 4. 최근년도를 가장 왼쪽에 기재
 5. 단기차입금에는 유동성장기부채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

상기의 내역은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2014년 월 일

주 소 :
 전 화 번 호 :
 ○○회계법인 : (인)

<서식 8>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회사명 : _____

(단위 :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이자비용)						
경 상 이 익						
특 별 이 익						
특 별 손 실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이 익						

- 주) 1. 구성비는 매출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
 2.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사별로 작성함
 3. 모든 금액은 십만원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4. 최근년도를 가장 왼쪽에 기재

상기의 내역은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2014년 월 일

주 소 :

전 화 번 호 :

○○회계법인:

(인)

<서식 9> 재무비율

재 무 비 율

회사명 : _____

(단위 : %)

구 분(산식)	년	년	년	가중 평균
<p>1. 수익성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 매출액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100) ·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100) ·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총자산×100) 				
<p>2. 안정성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 ·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100)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p>3. 활동성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 · 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매출채권) · 재고자산회전율(매출액/재고자산) 				
<p>4. 성장성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증가율(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100) · 영업이익증가율(당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100-100) · 당기순이익증가율(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100-100) · 총자산증가율(당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100-100) 				

주) 1. 재무비율은 <서식7>과 <서식8>에 기재한 수치를 이용하여 산정

<서식 10> 재무비율 총괄표

재 무 비 율 총 괄 표

(단위 : %, 배)

비 율	A사 가중평균	B사 가중평균	C사 가중평균	D사 가중평균	컨소시엄 평균
1. 수익성비율 · 매출액영업이익률 · 매출액순이익률 · 총자산순이익률 · 자기자본순이익률 · 총자산대비영업 현금흐름비율					
2. 안정성비율 · 유동비율 · 부채비율 · 차입금의존도 · 이자보상배율					
3. 활동성비율 · 총자산회전율 · 매출채권회전율 · 재고자산회전율					
4. 성장성비율 · 매출액증가율 · 영업이익증가율 · 당기순이익증가율 · 총자산증가율					

- 주) 1. 각사 가중평균은 <서식9>에 의해 작성된 가중평균을 기재(의왕시 지분은 제외)
 2. 컨소시엄 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 Σ (각사 가중평균 \times 각사 출자지분율)
 ※ 각사 출자지분율 : 컨소시엄 구성사가 출자회사에 출자할 지분율의 합을 100%로 환산
 하였을 때 각사 컨소시엄 구성사의 지분율
 3. 안정성비율은 최근년도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부채비율 작성 시 컨소시엄 구성회사 중
 전액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부채비율은 '자본잠식'으로 기재하고 컨소시엄 평균
 산정 시 제외
 4. 모든 비율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상기의 내역은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2014년 월 일

주 소 :

전 화 번 호 :

○○회계법인 :

(인)

<서식 11> 감사보고서 의견

감사보고서 의견

회사명 : _____

회계년도	감사의견	변형된 감사보고서인 경우 그 사유와 해소 여부
년		
년		
년		

주)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사로 작성함

2014 년 월 일

주 소 :
 전 화 번 호 :
 ○○회계법인 : (인)

투 자 확 약 서

사업명 :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및 운영 사업

본 신청자는 상기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투자 의무를 연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왕 시 장 귀하

<서식 13> 주주 및 경영진 현황

주주 현황

주주명	관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기재)	소유 주식수	금액	지분율
기타	-	-			
계					100%

- 주) 1. 관계는 대주주 또는 실질경영주와의 관계임.
 2. 금액은 주당 액면금액 기준임.
 3.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사별로 작성함.

경영진 현황

성명	직위/담당업무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기재)	학력 및 경력	관계

- 주) 1. 학력은 최종학력중심으로 기재하되, 대학이상의 경우 대학부터 기재함.(전공학과 병기)
 2. 경력은 회사 내·외의 주요경력 및 회사근속연수를 기재함.
 3. 관계는 대주주 또는 실질 경영주와의 관계임.
 4.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사별로 작성함.

<서식 14> 대표사 선임서

대 표 사 선 임 서

대 표 자	회 사 명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기인을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 공동참여자(권한위임자) 명단

회 사 명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날인	비고

의왕시장 귀하

- 주) 1. 대표사는 컨소시엄 내 출자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로 정함.
 2. 각사의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청렴 이행서약서

의왕시에서 시행하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및 운영 사업 공모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의왕시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공모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의왕시 담당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모에 유리하게 되어 협약이 체결되었거나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및 운영 사업 공모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의왕시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의왕시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협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착공 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당사의 임직원들은 본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모참가자격 제한, 사업협약 해제, 해지 등 의왕시의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의왕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공모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익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4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의 왕 시 장 귀하

<서식 16> 사업 협약 이행 각서

사업 협약 이행 각서

사업명 :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및 운영 사업

본사는 상기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약정된 기일 내에 사업협약을 불이행할 경우 본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처분권과 출자회사의 잔존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의왕시로 귀속하는데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4년 월 일

서약자	(인)

의왕시장 귀하

<서식 17> 사업실적 현황

사업실적 현황

구분	사업명	참여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규모	발주처	참여 지분율	비고
공공기관 공모형 SPC사업 주간사 실적								
공공기관 공모형 SPC사업 참여실적								

- 주) 1. 참여내용에는 사업시행, 관리운영, 지분출자, 시공 등으로 구분
 2. 사업규모는 건축연면적, 지분출자액 등으로 구분
 3. 비고란은 계약, 착공, 준공, 운영 등 현재 상황 기재
 4. 사진, 조감도 등 이미지는 첨부불가
 5. 사업실적증명서는 별도 제출할 것
 6.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각종 사업실적 및 시공능력평가액에 대한 근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것

<서식 18> 서면질의서

서 면 질 의 서			
회 사 명		신 청 접 수 번 호	
대 표 자	(인)	전 화 번 호	
E-mail주소		FAX번호	
소 재 지			
공모지침서 (Page)	질 의 내 용		

<서식19> 표지 양식

왕 송 호 수 레 일 바 이 크 설 치 및 운 영 사 업 사 업 계 획 서		30mm				50mm	※ 결표지양식입니다. ※ ① 신청접수번호(공란으로 제출) ② 일련번호 ③ 제출도서 총수량 ※ 도서규격 및 편철에 맞추어 작성	
	15mm	접수번호	A	-	①			
	15mm	관리번호	②					
	15mm		③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및 운영 사업 사업계획서

2014년 ○월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제안서 작성자 : (연락처 :)

의 왕 시

※ 회사명은 1부에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기재하지 않음

<서식19-1> 표지 양식

왕
송
호
수

레
일
바
이
크

설
치
및

운
영
사
업

사
업
계
획
서

	30mm	50mm		
15mm	접수번호	A	-	①
15mm	관리번호	②		
15mm		③		

- ※ 겉표지양식입니다.
- ※ ① 신청접수번호(공란으로 제출)
- ② 일련번호
- ③ 제출도서 총수량
- ※ 도서규격 및 편철에 맞추어 작성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및 운영 사업 사업계획서

2014년 ○월

의 왕 시

※ 회사명은 1부에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기재하지 않음

사 업 참 가 의 향 서

사업명 :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및 운영 사업

본 사는 상기 사업을 참여하기 위하여 대표자로서 각종 서류, 관련 증빙자료 및 사업계획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4년 월 일

서 약 자	(인)
서 약 자	(인)
서 약 자	(인)
서 약 자	(인)